

「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7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7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김명기)

가. 제안이유

- 평생교육 대상과 지원방법,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 참여촉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 대상 및 범위 명확화(안 제4조)
 - 종전의 평생교육의 범위를 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로 변경하여 평생교육 대상과 범위를 명확화
- 경비보조 지원 기준 구체화(안 제5조제2항, 제3항 신설)
 - 평생교육 활성화 방법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에 소요되는 지원기준 구체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보조 지원 기준을 구체화 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,

-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이 되는 제2조(정의) 조항을 삭제하고, 평생교육 대상과 범위를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,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을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·시설·단체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.
-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조항과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교육비와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 정책을 구현하고자 함.
-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평생교육의 범위”를 “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평생교육”을 “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, 평생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.

제5조의 제목 “지원”을 “경비보조 및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군수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·시설·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

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 중 “군수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”를 “군수는 법 제14조”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 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, 성인기초·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 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주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</p> <p>2. “문자해득교육”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·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(文字解得)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.</p> <p>3. “평생교육사”란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</p>	<p><삭 제></p>

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(평생교육의 범위) 군수가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제5조(지원)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제6조(설치) 군수는 「평생교육

제4조(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)

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, 평생교육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.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5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군수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·시설·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

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설치) 군수는 법 제14조---

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4조(설치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
③ 군수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임기) -----
----- 한 차례만 연임

제14조(설치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-----

----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-----
